2022년 1분기 예산의 이체·전용 내역 보고

1. 근거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(예산의 이용·이체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(移替)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.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(예산의 전용)

- 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</u> <u>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</u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0 6. 9.〉 〈시행 2020. 9. 10.〉

2. 예산 이체 내역

○ 해당없음

3. 예산 전용 내역

○ 신청부서 : 도시안전과 등 3개 부서

○ 전용예산 : 3건 55,703천원

○ 세부내역

연 번	예 산 과 목			전용예산		승인	
	부서명	세부사업	통계목	감	증	일자	예산 전용 사유
1	도 시 안 전 과	민방위 교육운영비(보조)	기타보상금 (301-12)	6,740		2/25	○ 코로나19 장기화로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(위탁사업)으로 변경되었으며, 당초 계획보다 교육대상이 증가하여 위탁 교육비 추가확보를 위해 전용하고자 함
		민방위 교육운영비(보조)	사무관리비 (201-01)		6,740		
2	아 동 청 소 년 복 지 과	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5,000		3/14	○ 2021년 11월부터 시행한 영등포청소년문화 의 집 회재안전성능보강 및 방수 공사의 준공에 따른 감리비 지급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'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비'를 전용하고자 함
		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	공공운영비 (201-02)	3,963			
		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	감리비 (401-02)		8,963		
3	사 회 적 경 제 과	4차산업 청년취업지원	행사운영비 (201-03)	40,000		3/28	○ (사)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주관「2022 청년도전 지원사업」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(직접 수행→보조사업자 수행)되어 이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전용하고자 함
		4차산업 청년취업지원	민간경상사업보조 (307-02)		40,000		